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20호 | 2023년 7월 4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위험요소 및 해소방안

윤 기 찬 연구위원(보건학/행정학 박사)

《요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 (추진경과)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상향으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 O (활용실적) 2022년 말 현재 총 1,419만명 대상 3,786만건 실적
-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로 하향,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종료('23.06.01)
- (재시행) 윤석열정부 2023년 6월 1일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실시
- 의료취약지·취약계층 이외 **의료기관 1회 이상 대면진료 환자로 확대**, 실질적 원격진료 실시
- 디지털헬스의 활성화에는 동의하나, 비대면진료가 갖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해소 필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위험요소

- O (오남용) 초진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남용 및 전화를 통한 오용 사례 발생
- O (재정부담) 1인당 연 1회 이용 시 1조 7,445억원 비대면진료 추가비용 발생
- O (슈퍼앱 등장) 비대면진료는 플랫폼기업의 슈퍼앱(SuperApp) 가속화와 제약·의료기기·민간보험 등과 연계될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디지털격차)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리터러시 격차로 진료 소외 가능성
- O (공론화부족) 건정심의 형식적 합의에서 벗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합의 도출

■ 비대면진료 해외사례

○ (시사점) 비대면진료 시행관련 엄격한 기준과 초진에 대한 비대면진료 금지, 초진의 경우도 주치의제도 연계 등을 통한 의료의 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노력

■ 위험요소 해소방안

- 오남용 방지를 위한 1차의료기관(주치의) 재진환자 대상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진료 적정수가 모델 개발
- 디지털 격차 등 비대면진료 이용 상 불평등 해소
-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비대면진료 강화
- 시범사업 확대 및 제도화, 공공 비대면 진료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제공방식화 다양화
- 공론화를 통한 비대면진료 입법화 방안
 - 비대면진료 플랫폼기업 규제, 대상 및 범위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 상시모니터링 법제화
- ▶ 키워드: 비대면진료, 원격진료, 오남용, 디지털 격차, 재정부담, 주치의제도, 공론화
 -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O 추진배경

- (코로나19)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개정 한시적 비대면진료 근거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20.12.15)
- (기간종료)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23.6.1)
- **(활용실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총 1,419만명 대상 3,786만건 적극 활용. **1인당 평균 2.7회 이용**('20.2.24~'23.4.30, 심평원 청구현황)
- (재추진)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 면진료 시범사업 재시행('23.5.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근거법에 의하면 제도반영이 의무조항인 만큼 원격진료 제도화 가능성 대비 엄격한 기준과 통제장치 필요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O 추진내용

- (실시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약국 등
- (대상환자)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목적으로 제한적 대상 설정(의원급)
- ①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② (삼·벽지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지역 거주 환자
- ③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등록 장애인)
- ④ (감염병 확진자) 감염병예방법 상 1·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 타 의료 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시행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가능, 처방전은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송부,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 금지, 의약품수령(본인, 대리, 재택 수령 등)
- (준수사항)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 금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위험요소

○ (비대면진료 오남용)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허용 후 중개 앱을 통해 초진에 대한 비대 면진료와 화상대화가 아니라 전화통화로 진료와 처방 실시되는 비대면진료 남용사례 발생

[사례 1] (초진처방) 계도기간 3개월 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로 초진허용 및 전화통화 처방 [사례 2] (처방기간) 약 처방은 최대 90일치까지 가능하나 1년치 탈모약이나 다이어트약 구입 [사례 3] (플랫폼앱) 진료플랫폼 5곳 중 절반 이상이 장기처방 가능하다고 응답 ·동아일보 2023년 7월 4일차 기사내용, MBC 2023년 6월 19일자 보도내용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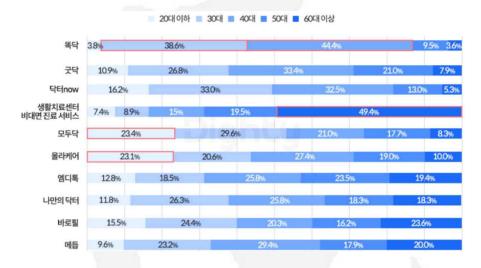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남용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정부의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이행 필요
- (건강보험 재정부담)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결과, 2020년 214억이던 비대면진료비가 2020년 말 1조 4529억으로 68배 증가
 - 윤석열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시로 2023년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51,404천명이 1 년에 1회만 비대면진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조 8,715억원 소요
 - 2022년 **비대면진료비**를 이용자 수로 나누면 **1인당 114,222원**으로 계상
 - 비대면진료의 이용횟수가 확대될수록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코로나 사태 후 비대면 진료 추이		질환별 비대면 진료 현황		구분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전화상담관리료	진찰료 기산	
※코로나 재택	※코로나 재택 치료 2925만건 (2020~2022년) 포함 1272만명				TE		초진 재진		의료결정기시원급/진화강급관디료	선열표 기간
(2020~2022)			① 고혈압	117만건(15.8%)	상급종합 병원	1000	19,490원	15,110원	4,610원 ~ 8,950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야간, 공휴 가산
	이용자 수 126만 진료비 1150억 2021년		② 급성 기관지염	55,7만건(7.5%)	종합 병원	전 문 17,77	17,770원	13,320원	140원 ~ 5,240원 (의료질평가지원금)	30% 1세미만
84만		1조 4529억원 2022년	3 2형 당뇨병	35.7만건(4.9%)	병			2,230원 ~ 3,780원	1,270원 ~2,020원 6세미만	
			4 알레르기 비염	14.3만건(1.9%)	병원	원	15,920원	11,530원	(의료질평가지원금)	520원 ~ 830원
			5 감기	11.6만건(1.6%)					3.460원(재진) - 4.840원(초진)	이간, 공휴, 토요일오전 30% 1세미만
214억 2020년			※코로나 재택 치료 제외	치료 제외한 736만건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4	16,140원	11,540원	(전화상담관리료)	1,430원~2,270원 6세미만 590원~930원

- 특히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진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 등 계절성 질환 등이 31.7%를 차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가능성 예상
- **비대면진료수가**는 대면진료수가 100%에서 30% 추가한 **130%로 전면허용 전제 시** 높은 수준
 - 동네의원 비대면진료에 수가 30%를 더하면 최고 4,840원(초진) 추가 부담
- (슈퍼앱 등장기능성) 윤석열정부의 비대면진료 전격 허용은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분야의 '슈퍼 앱(SuperApp)' 등장 가속화
 - 2023년 현재 10개 이상의 비대면 중개 플랫폼 기업이 활동, 특히 업계 1위 0000의 경우 누적 이용자 600만명 돌파, 520억원 투자 유치로 슈퍼앱으로 확대 가능성
 -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 최소 10조원** 정도 추산(2022년 8월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인터뷰 중에서)
 - 한국의 의료시장 193조 중 입원·수술·팬데믹 등 **공적 부문 제외한 시장 59조원의 17% 수준**
-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중개와 약 배송을 넘어 병원예약, 건강검진, 개인건

강기록(PHR), 영양제, 맞춤형 건강보험 등 의료전반을 아우르는 B2C 의료슈퍼앱

-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이 제약, 의료기기, 민간보험 등 기업과 B2B로 확대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차원의 불평등 발생
 - 특히 슈퍼앱 기업들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물류센터형 약국***이나 의료컨설팅, 민영보험 등을 운영할 경우 **일반국민의 민간의료비 부담 증가 예상**
 - * 물류센터형 약국: 업체가 유통망을 갖춘 대형물류 센터를 건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
- (디지털 격차)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수혜집단으로 추정되는 노인·장애인 등은 디지털리터러 시(Digital Literacy) 등으로 비대면 진료 접근성에서 소외 가능성



- 비대면진료 앱 연령별 이용자는 3040층의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접근성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발생
- 다만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49.4%로 가장 높았는데, 해당 앱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이 설치
-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리터러시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
- (공론화부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4항에 근거한 합의제 기관으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대면진료 허용 논의하는 9차 회의에 있어 가입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소속 2명의 위원 배제
- 비대면진료 문제점인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 의료의 질 저하, 통합돌봄의 우선순위 하락, 의료인력배치의 왜곡 등 국민 안전을 고려한 공론화 과정 필요성 대두
- 건정심의 결정권한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공론화를 통한 국민의 동의(Kingdon, 1995; 윤기찬, 2016)와 건강보험 관련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참여는 필수적
 - 비대면진료 등 정책상 쟁점사항은 건정심보다 국회 차원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화 논의필요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3. 비대면진료 해외사례

- O 비대면진료 해외현황
 - (전망)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19년 254억 달러(33조6115억원)에서 연평균 16.9%로 성장 해 2025년에는 556억 달러(73조5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코노미스트, 2023)
 - (초진허용여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3년 4월, **G7국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실태 분석결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불허하거나 주치의제도를 전제로 허용
 - 미국은 민영보험 형태의 국가임에도 장애인, 저소득층 제외 2024년 12월 31일로 초진허용 종료
 -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국가건강서비스(NHS) 형태로 **주치의에 의한 비대면 초진** 허용
 - 독일과 이탈리아는 비대면 진료 재진에 한해서 허용
- O (미국)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 변화 추이 연구 결과, 감염 확산 방지 및 원격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팬데믹 기간 중 원격진료 비중 급상승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진료비 보험적용	 Medicare: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에만 원격의료 보험 적용 Medicaid: 주(state)마다 원격의료 관련 법제가 다름 민간의료보험: 일부 주만 parity law 적용 	 Medicare: 지역에 관계없이 원격의료에 대해 보험 적용 Medicaid와 일부 민간의료보험: parity law 적용 확대 		
의료면허	• 해당 주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가능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다른 주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의료 <mark>데이터</mark> 프라이버시	• 의사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에 관련된 모든 제공자와 기업이 HIPAA 준수의 의무를 지나므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원격진료 가능	• 코로나19 동안 선의로 발생된 HIPAA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Facetime이나 Skype등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됨		

- 2021년 원격진료 경험이 있는 1차 진료 의사와 원격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 설문 결과, 의사의 60%는 원격진료의 질이 대면 방식보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인식
-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 1,417명 중 64%가 대면진료를 선호했으나, 주로 고령의 환자(85%) 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81%), 아시아인(88%) 등 취약계층은 직접 방문 선호
- (영국) 영국 정부는 원격의료를 NHS 표준(standard of care)화 계획(2023년까지)
-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원격의료가 급속도로 확산
- 2019년 7월부터 모바일 플랫폼인 NHS App 통해 1차병원(General Practice, GP)과 연계

- 앱을 통해 진료기록 열람, 장기 복용약 자동 처방전 발급
- 일부 병원의 경우 NHS App을 통해 원격진료 가능
- (일본) 1997년 원격진료 부분 도입, 문제점 진단 및 환자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의료정책연구소, 2022)
 - 원격의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 공표
- '온라인 진료 수가'는 2018년 진료수가 신설, 2020년 온라인 초진료가 산정, 2021년 8월 '온라인 진료 특례 조치의 항구화'발표

구분	온라인 초진료	대면 초진료	온라인 재진료	대면 재진료
2018년	-	282점	70점	72점
2020년	214점	288점	71점	73점
2022년	251점	288점	73점	73점

- 온라인 초진은 대면 초진료보다 수가가 낮고, 온라인 재진료와 대면 재진료 수가는 동일
- 온라인 진료는 환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단골 병의원급 기관의 의사**(카카츠케)에 제한
- 이후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병행하며 온라인과 전화 진료 가능
- 온라인 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2020년 9.7%에서 **2012년 12월 15.5% 차지**
- (중국) 2014년 '의료기구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으로 원격의료 개념 도입 및 온라인 병원 개소(김지연, 2020)
 - 온라인 병원은 실제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ICT 기술을 활용, 온라인을 통한 원격진료와 처방
 - 기존 의료기관이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병원 개업
 - 온라인 병원은 재진만 가능하며, **초진은 이용 불가(2020년 현재 158개 이상** 온라인 병원)
- (시사점) 비대면진료 시행과 관련 외국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대면 초진을 금지한 국가가 많고, 초진의 경우에도 주치의제도와 연계
- 미국의 경우 민영보험 위주의 국가임에도 코로나19 이후 대면진료의 중요성 강조
- 중국은 국토 면적으로 인한 의료기관 접근성의 문제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역시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초진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금지
- 일본의 경우 1차 비대면진료 허용은 **주치의제도 등 1차의료기관과의 연계** 하에서 실시

4. 위험요소 해소방안

- 오남용 방지를 위한 1차의료기관 대상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
 - 비대면 중개 플랫폼(슈퍼앱)에 의한 **오남용**, **오진**, **의료 질 저하 문제해결**을 위해 **비대면진 료는 1차의료기관(주치의) 재진환자에 한정**하여 진료하는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에 **동네의원을 방문의료(왕진)를 포함하여** 지역 내 등록환자와 가족 대상 병력관리 및 1차 진료, 비대면 건강 상담 및 처방, 질병예방, 건강교육 등을 제공하는 1차 기관으로 지정
- 일본의 사례와 같이 동네의원의 지역적 범위와 접근시간을 규정하여 대도시 쏠림현상 방지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진료 적정수가 모델 개발

- (전제조건)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수가 30%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1차의료기관 제한과 더불어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모델 개발 필요
- (운영방식)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조건으로 합리적 비대면 진료수가를 산정하여 안정적·합리적 수준의 보상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
 -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비 수가는 동일(미국, 영국, 중국)하거나 대면진료 수가 우위(일본) 고려
- (모델개발)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시 상대가치점수 책정을 위한 시간적 노력과 자원(인력 장비 비대면 진료의 차별성 근거, 진료과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수가모델 개발 필요

○ 디지털 격차 등 비대면진료 이용 상 불평등 해소

- (추진방향) ICT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헬스 방향성은 동의하나, 비대면진료로 인한 디지털 격차, 의료의 질적 하락,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 불평등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
- (디지털격차해소)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에(노인, 장애인)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보건기관을 통한 디지털 교육 강화 및 비대면진료 수단으로서 전화사용에 대한 제한적 허용
- (의료불평등해소) 비대면진료는 일정부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 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약자에 대한 불평등 완화효과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휴가제도의 확대와 국가가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일용직·특수고용직·소상공인·일부 직장인 대상 병원진료 목적 유급병가 지원 확대

O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비대면진료 강화

- (개요) 비대면진료의 허용으로 인한 대도시와 농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강화 모색
- (강화방안)
- ① 시범사업의 확대 및 제도화: 현재 48개 시군구에서 2023년 5월 기준 인구 소멸위험지역

- 118곳(51.8%)으로 확대하고, 해당지역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모색
- ②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정부와 유관기관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신뢰성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강화
- ③ 제공방식의 다양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화상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상황(고령층,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방식 이용이 어려운 환자 및 지역에 있는 환자)에서 화상과 전화 모두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 공론화를 통한 비대면진료 입법화 방안

-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민간보험 • 제약회사 • 의료기기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등 12인, 2023.03.30.)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

-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1차의료기관 재진환자 대상 제한적 허용, 의료취약지에 대한 비대면진료 강화, 물류센터형 약국 운영금지 등 비대면진료 관련 엄격한 원칙·기준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최혜영 의원 등 12인, 2021.10.18.)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되었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

- (비대면진료 상시적 모니터링 법제화) 일본의 '원격모니터링' 제도와 같이 자택 내 환자, 임 산부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및 수가신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0인, 2021.09.30.)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환자에 대한 상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의료 행위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의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으로 비대면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

<참고문헌>

김지연. (202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안. 「KISTEP Issue Paper」.
동아일보. "1년치 약 미리 사두세요? 과잉 비대면처방 유도", 2023년 7월 4일자 기사내용.
메디게이트뉴스. "슈퍼앱 도전하는 0000, 비대면 진료 침투율", 2022년 8월 18일자 기사내용.
윤기찬. (2016).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의료정책연구소. (2020).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2022).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코노미스트. "투자사 뭉칫돈 몰렸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2023년 6월 1일자 기사내용.
중앙일보. "월급 206만원에 37개월, 공보의 싫다, 현역 갈 것 75%". 2023년 6월 7일자 기사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자 경험 조사」.
MBC. "고삐 풀린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도 모두 비대면?". 2023년 6월 19일자 보도내용.
Kingdon. J. W.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en: Little, Brown and Co.
2nd Edition, 199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